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		
의안번호	제12호	제 출 자	장진호 의원 등 5명
제 출 일	2024. 02. 13.	회 부 일	2024. 02. 13.

1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방문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과 일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적용범위 (안 제4조)
- 우선주차구역 설치 (안 제5조)
- 우선주차구역의 장소 및 이용(안 제6조, 안 제7조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방문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